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 9. 30 선고 2014가단6541(본소), 2015가단4177(반소)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토지인도등]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 종결 2015. 9. 16.

판결 선고 2015. 9. 30.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안동시 C 지상 별지1 도면 표시 16, 1, 15, 14,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13㎡, 같은 도면 표시 18, 17, 19,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C) 부분 1㎡ 각 지상 건물을 각 철거하고, 위 각부분 토지를 인도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2 도면 표시 8, 3, 4, 5,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3㎡에 성토된 흙을 제거하고, 위 (L) 부분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청구취지 :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안동시 C 대 521㎡(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0. 8. 2.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3. 12. 30.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 사건 원고 토지 옆의 D 전 66㎡(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의 남편 E은 1985. 12. 23. 이 사건 피고 토지 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원고 토지를 별지1 도면 표시 16, 1, 15, 14,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13㎡, 같은 도면 표시18, 17, 19,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C) 부분 1㎡(이하 '이 사건 별지1 (L), (C)부분'이라 한다)을 침범하여 건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피고 토지 지상 별지2 도면 표시 8, 3, 4, 5, 8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이하 '이 사건 별지2 (L) 부분'이라 한다) 석축 위에 성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한국국토정보공사 안동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원고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별지1 (L), (C) 부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점유취득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상속인인 E이 1985. 12. 23.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고,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면서 이 사건 별지1 (L), (C) 부분에 대한 점유도 함께 개시하였고, 피고의 상속에 의하여 E의 위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점유를 계속함으로써 점유가 개시된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5. 12. 23. 이 사건 별지1 (L), (C) 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바, 원고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므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토지의 점유자는 만료 당시의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짐에 그치고,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으로 대항할수 없는바(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996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이 1985. 12. 23.경 이 사건 별지1 (L), (t) 부분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고, 피고가 상속에 의하여 E의 위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점유를 계속함으로써 점유가 개시된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5. 12. 23. 이 사건 별지1 (나), (C) 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그 이후인 2010. 8. 2., 2013. 12. 30. 이 사건 원고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권리남용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설령 이 사건 별지1 (L), (C) 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부분 지상 건물 철거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로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11524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오직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는 데 목적이 있고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이 사건 별지2 (L) 부분에 성토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위 부분을 성토함으로써 점유한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이 사건 별지2 (L) 부분 지상 성토된 흙을 제거하고 이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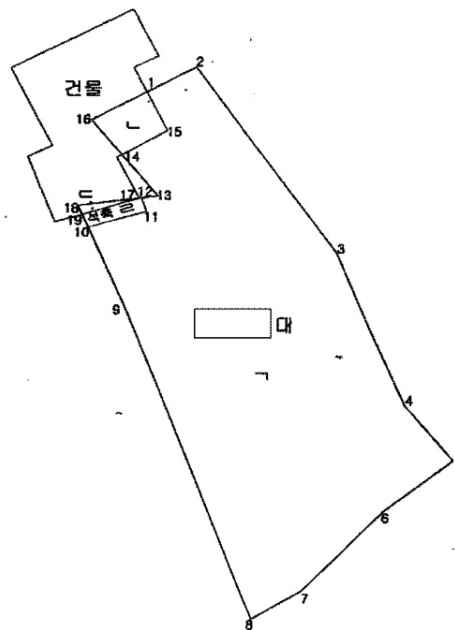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와,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덕기

별지 1

감 정 도

토지소재 : 경상북도 안동시



지 번	부 호	면적(㎡)	비 고	측정부분
ㄱ	1,2,3,4,5,6,7,8,9,10,11,12,13,14,15,1	502	그 외 부분	
ㄴ	16,1,15,14,16	13	건물(가)의 일부 점유부분	건물의 벽선
ㄷ	18,17,19,18	1	건물(가)의 일부 점유부분	건물의 벽선
ㄹ	19,17,12,11,10,19	5	석축 점유부분	석축하단
		521		
	아 래 빈 칸			

별지 2

감 정 도

토지소재 : 경상북도 안동시

지 번	부 호	면적(㎡)	비 고	측정부분
 ㄱ	1,2,3,8,5,6,7,1	63	그 외 부분	
ㄴ	8,3,4,5,8	3	석축위 성토부분	건물및콘크리트
	아 래 빈 칸			

